

방송통신융합시대의 4대 현안과 과제

제 1호(2008. 3. 18)

< 목차 >

- I . 디지털 융합서비스의 확산
- II . 방송통신융합의 4대 현안
- III . 향후 정책방향

작 성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전략기획팀
이규정 연구위원(1kj@nia.or.kr)
차재필 선임연구원(paulc@nia.or.kr)
박은혜 선임연구원 (parkeh@nia.or.kr)
주윤경 연구원 (juyunkyung@nia.or.kr)

< 요약 >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DMB, IPTV 등 디지털 컨버전스가 확산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방송과 통신 융합이 활성화 되고 있음
 - 미국, 영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구를 일원화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
 -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융합의 활성화와 건전한 정착을 위해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

□ 우리나라 방송통신 융합의 4대 현안

구분	내용
규제 기구	방송통신기능 재편에 따른 부처간 업무의 조화
규제 체계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논의
사업자간 이슈	M&A 등 원활한 산업간 융합의 지원 망과 콘텐츠에 대한 동등 개방성 이슈

-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서비스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 ① 재편된 규제기구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기구간 상호 충분한 이해와 조정이 필요
 - ② 세계적 추세인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기반 조성 마련 수요 증가
 - ③ M&A 등 산업간 합종연횡이 확산추세이며 산업간 융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 확산
 - ④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통한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의 망과 콘텐츠의 동등 개방 필요

I. 디지털 융합서비스의 확산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상품 및 서비스가 결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 확산 추세
 - 초기 단말기간의 융합에서 최근에는 의료·유통·교육·미디어 산업 등으로 확장



- 특히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의 상호 보완적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 통신과 방송의 융합 트렌드 >

통신	구분	방송
1:1	전송 구조	1 : many
경합성	경합 여부	비경합성
쌍방향성 지원	쌍방향성	단방향성
폐쇄적	사업구조	개방적
이용자(송수신자 상호간의 니즈)	서비스 통제권(편성권)	사업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구조	중앙 집중적 커뮤니케이션
비공개적	내용의 공개	공개적
사적 커뮤니케이션(규제없음)	공공성(공익성)	공익의 의무(내용 규제)

- 우리나라도 '07.1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 제정되어 '08.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대표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 ※ IPTV: 인터넷망을 통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 해외 IPTV 사업 현황 >

서비스사업자	서비스명	서비스 국가	도입일자	가입자 수
AT&T	U-Verse	미국	2006.1	200,000명
FASTWEB	FASTWEB	이탈리아	2001.7	320,000명
FREE	Freebox TV	프랑스	2003.12	860,000명
HOMECHOICE	Home Choice	영국	2004.7	45,000명
TELEFONICA	Imagenio	스페인	2003.12	240,000명
DEUTSCHE TELEKOM	T-Home	독일	2006.8	47,000명
PCCW	Now TV	홍콩	2003.8	700,000명

* 자료: Garter, 2006.12기준

- 음성전화, 초고속 인터넷(데이터 서비스), 방송영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결합 서비스(TPS)가 상품화

※ TPS(Triple Play Service): 23개 OECD국가가 서비스중(OECD, 2006)

- o 최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기구 등의 새로운 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

< 국내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관련 주요 체제 개편 >

국가	주요 법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8)
미국	방송통신 융합 현상에 적합한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제정('96)
영국	커뮤니케이션 법 제정 및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 설립('03)
일본	전기통신·방송행정 업무 총무성으로 이관,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再 제정('01)

- o 새로운 IT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및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들이 잔존

< 국내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주요 4대 현안 >

구분	주요 내용
조직	방송통신기구 재편에 따른 역할 조정
규제체계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진입규제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
망중립성	모든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동등한 개방

II. 방송통신융합의 4대 현안

1. 방송통신기구 재편에 따른 기관간 역할 조정

□ ‘방송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출범(‘08.2)

○ 기존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과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규제를 총괄하는 기구로 구성

-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을 신설하여 융합 정책을 전담케 함으로써 융합 정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 주 특징

○ 일본은 방송통신기구에서 방송통신 및 정보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방송통신 정책만 담당

※ 우리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보화기획을 총괄하는 것으로 변경(‘08.2)

< 한·미·일 3개국의 방송통신기구 현황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명칭	방송통신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총무성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08.2)	통신법 (Communication Act of 1934)	중양성청 등 개혁기본법(2000)
법적성격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	독립기구	정부 독립제기구
의사결정	·상임위원 5명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3인 * 2인(위원장 포함) : 대통령 선임, 3인: 국회 선임	·상임위원 5명 -위원장1인 -상임위원 4인 * 위원장 : 상원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 4인 : 동일 정당 위원 3명 이내	-
조직	2실3국7담당관34과	6국 10실 27과	2국 28과
주요 업무	·방통융합에 관한 정책 ·통신 정책 ·방송 정책 ·이용자 및 네트워크 보호	·무선통신 정책 ·유선통신경쟁 정책 ·방송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정보통신 정책 ·방송 정책 ·전기통신 정책 ·전파 정책

□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와 공정위의 업무 중복 발생 소지

- 방통융합에 따른 신규 서비스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존 지배적 사업자와 여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이슈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네트워크국내 공정경쟁 업무를 전담하는 조사 기획총괄과, 시장조사과, 심결지원팀을 마련하였으나,
 - 시장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공정경쟁 규제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 업무 중복 및 갈등 내재

< 정통부와 공정위간 의견 대립 사례 >

시기	시안	정통부 주장	공정위 주장	결론
2005.5	KT 등 요금담합 관련 과징금	유효경쟁 위한 행정지도 있었음	명백한 담합 증거 있음	2006.8. KT 담합행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과징금 취소 및 재산정 결정
2005.12	보조금 규제 연장	3년 규제 연장 및 3년 이상 장기 가입자 허용	규제 연장 불가	2년 규제 연장, 2년 이상 장기 가입자 허용
2007.1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시장 지배적 사업자 재판매 상한 요금 인가제	재판매 상한 및 요금인가제 폐지	재판매 상한 폐지, 요금 인가제 폐지(2010년)
2008.2	SKT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	주파수 정책은 정통부 고유 영역	800MHz주파수 로밍 및 재분배	인가조건에서 주파수 문제는 배제

* 자료: 전자신문 2008.2.2

□ 방송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의 분리에 따른 방통위와 문화부의 업무 충돌 발생 소지

- 뉴미디어라는 동일 산업에 대하여 방통위(뉴미디어과)와 문화부(뉴미디어산업팀)가 각각 규제와 진흥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
- 방송영상·광고 진흥 정책은 문화부(방송광고팀)에서 담당하나 관련 심의 기능은 방통위(방송정책국)가 담당
- 방송규제기능과 진흥정책기능의 분리는 부처간 갈등과 사업자 규제의 분산·중복 등을 야기할 소지

2. 방통융합의 새로운 규제시스템 정립

- 융합서비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수직적 산업구조에서 수평적 산업구조로 변화
 - 방송통신 융합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종합적인 규제 체계의 도입 및 규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논의되는 상황
 - 해외 주요 국가들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 변화에 따라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 각국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

구분	방송통신 규제체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산업 및 방송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6년 통신법을 개정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조직 혁신에 착수 · 현재까지는 수직적 규제체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중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네트워크와 콘텐츠 부문을 분리 규제하는 체계(NRF; New Regulatory Framework) 도입 · 전송계층에는 일반경쟁 원칙 도입,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 콘텐츠계층에는 유럽지역의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공익을 목표로 규제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플랫폼 부문에는 동일한 규제 적용 · 플랫폼을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차별 규제 · 공중 대상 서비스는 강한 내용규제의 적용 ·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

- 우리나라 규제기관도 현재의 수직적 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으나 도입 방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

< 방송통신의 수평적 규제체계(안) 비교 >

구 분	분류체계	대 상	규제목적	규제영역
2분류 (정통부)	콘텐츠	방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사업자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별 차등 규제	겸영제한 및 광고규제 프로그램 내용심의
	네트워크	통신망, 인터넷 망, 지상파전송망 등 모든 전자통신 서비스의 전송 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행위 규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 단순 전송사업(네트워크)은 규제 완화 · 콘텐츠 사업은 내용,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차별적 규제체계 적용			
3분류 (방송위)	콘텐츠	콘텐츠를 제작/편성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사회문화적 다양성 저작권 보호	차별적 규제 음란물 등의 내용 규제
	네트워크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	보편적 서비스 확대 개인정보 보호	보편적 서비스 및 요금규제 망 접속 의무
	플랫폼	자체제작/외부에서 구입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불공정행위 및 불법정보 유통관리/기술에 대한 규제 한정
	· 전송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방송제공의 주체이며 여론형성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의 계층으로 구분			

○ 이종 망간의 융합이 가능하여 사업자와 서비스의 구분이 사라지는 등 영역간 경계가 없어져 수직적 규제의 정당성 약화

- 망 독립성이 강하고 서비스가 제한적일 경우 수직적 규제가 효율적일 수 있으나,
- 수직적 규제 체제에서는 신규 서비스 등장 시 기존의 사업자 분류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고 기관 간 갈등 소지가 큼

※ 동일한 콘텐츠가 IPTV와 DMB일 때 다른 규제에 적용받게 되어 중복규제 우려와 차별을 야기하는 등 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가능

3. M&A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 방송통신 융합으로 산업간 영역 및 서비스의 구분이 없어져 업종간 활발한 M&A 및 제휴 예상

국가	방송통신 사업의 M&A 및 제휴 사례
한국	·02년 KT가 스카이라이프의 최대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방송으로 사업영역 확대 ·지난 2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여 통신과 방송의 결합을 이룸 ·KT는 KTF와 합병을 준비 중이며 합병시 KT는 유무선통합 및 IPTV사업 본격 진출
미국	·장거리사업자 AT&T와 케이블사업자인 TCI(Telecommunications, Inc.)간 합병 - AT&T의 장거리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서비스와 TCI의 케이블, 통신 및 고속 인터넷사업을 통합해 AT&T Consumer Services 설립 ·US West가 케이블TV업체인 Continental Cablevision 인수 - 전 세계 대상 케이블TV, 전화서비스 등 유선서비스 사업 전개, 케이블 망을 통해 전화서비스 및 케이블 TV서비스 동시 제공
영국	·영국 위성방송사 BSkyB와 통신회사 British Telecom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BIB(British Interactive Broadcasting) 설립

-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

-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방송과 통신 영역의 경계를 없애고 상호 진입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

구분	방송통신 규제체계
미국	·96년 통신법 제정을 통해 통신·방송·케이블TV 등 진입규제를 폐지
영국	·통신법 개정으로 규제 최소화 정책 방송 전송서비스에 한해 허가제 철폐
일본	·법체계를 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휴 및 합병 유도
유럽연합	·EU지침(Directive)을 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허가하며 통신·방송망을 통한 모든 서비스에 최소한의 진입규제 권고

- 진입규제 완화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지배력 편중 등 오히려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신규 융합 서비스의 규제정책은 진입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는 상황

4. 망과 콘텐츠의 동등 개방

□ IPTV서비스의 핵심 쟁점은 망과 콘텐츠의 동등개방 보장에 관한 사업자간 이견

- 망 동등 개방관련 망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KT 등 망 사업자는 자사의 서비스 QoS(Quality of Service: 통신 서비스 품질)보장 등을 이유로 자사의 망 개방을 꺼려하는 입장
 - IPTV사 등 망 이용자는 망을 타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의 망중립성¹⁾ 보장을 요구
 - ※ KT, 하나로 등은 상호 망을 개방하지 않아 이용자는 타사 제공 IPTV서비스 이용 불가(전자신문, 2008.2.11)

< 망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 >

망 사업자	망 이용자
지속적인 망 투자비용회수, 유지 및 재투자를 위해 개방에 부정적	망內 특정 사업자간 차별은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저해

- 콘텐츠 동등 개방과 관련하여 방송사와 매체사간에도 이견이 발생
 - 지상파 방송사 등은 자사 콘텐츠의 차별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느 매체나 동등하게 자사 콘텐츠 개방을 부정적 입장
 - DMB, IPTV 등 매체사는 신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매체사에 동등하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

< 망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 >

콘텐츠 제공 사업자	콘텐츠 이용 사업자
자사 콘텐츠의 독점이 생명	주요 콘텐츠는 어느 매체에거나 동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

1) 망중립성은 어느 서비스나 네트워크를 동등하게 개방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 망의 특성을 의미
 < 망 중립성의 3대 원칙(김도훈, 2002 재구성) >

원칙	Non-Discrimination	Interconnection	Accessibility
내용	인터넷 상의 모든 사이트, 콘텐츠, 플랫폼은 동등 대우	인터넷 망은 동등한 상호 접근이 보장 되어야 함	모든 콘텐츠에 동등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함

-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도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미국	영국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년부터 「망 중립성」 보장내용의 법안 발의 · '07년 「망 중립성」 법안 기각 · 미 대선 후보 '오바마' 는 「망 중립성」 보장을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중립성」에는 찬성 · 별도의 법안은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내 유효경쟁이 충분 - 시장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제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중립성」에는 찬성 · EU 권고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간 경쟁 유도 - 최소한의 QoS보장 대책 마련 - 망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부문 사업과 콘텐츠 등 서비스 부문의 사업단위 분리 규제를 권고

* 자료: CNET, 전자신문 재구성

- 우리나라는 망·콘텐츠 동등제공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제정하였으나 시행령 제정에서 갈등

< 시행령 제정 관련 쟁점 >

구분	통신계	방송계
망 동등 제공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설비만 의무 제공	선로·교환설비 및 전용회선 의무 제공
콘텐츠 동등 제공	시청점유율에 따른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제공	시청률·국민적 관심도 등을 기준을 고려한 주요 방송 프로그램만 제공
	케이블방송사업자 50%이상이 송출하는 방송 제공	
	체육경기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 중계방송 제공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08

□ 유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도 NHN, Daum 등에 의해 망중립성 논의 제기

- 무선 인터넷 분야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무선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대한 무선통신망 동등 개방에 대한 이슈 증가
 - 핸드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시장은 CP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SKT 등 이동전화망 사업자들이 견제

< 사업자간 무선 인터넷망 운영 차별 내용 >

구분	이동통신사	무선 콘텐츠 사업자
과금제	회수대행	소액결제
이용한도	없음	SKT - 건당 5만원(월10만원) KTF - 건당 5만원(월12만원)
주민번호인증	미시행	시행
과금 알림 SMS	미발송	발송
과금자료전달	월 1회	실시간
무선인터넷 접속방식	핫 키로 바로 접속 가능	핫키로 접속 후, 자사 사이트 접속 가능/ WINC로 접속

* WINC는 모바일주소('**000')를 눌러 접속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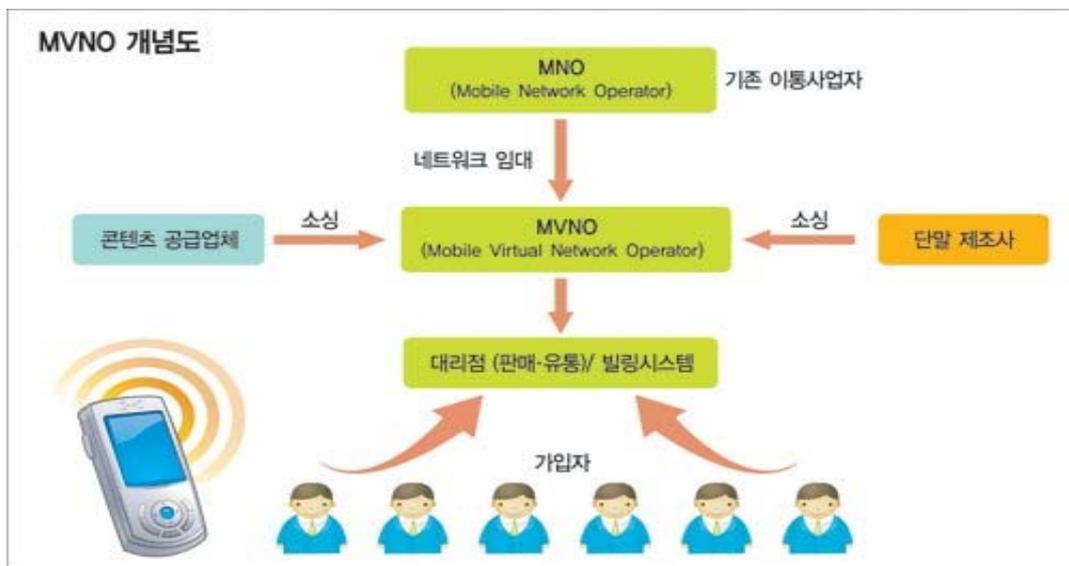
- 최근 정부의 SKT의 하나로통신 합병 허가조건²⁾으로 이동통신망 시장의 불평등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NHN 등 인터넷 기업들도 실질적인 의미의 망개방을 위해서 법제화 필요성 제기
 - ‘이통사간 무선인터넷브라우저 환경 표준화’, ‘과금 및 이용료 기준 차별 금지’ 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의견(2008.3.3, iNews24)
 - 통신사간 무선인터넷 사용 방식이 틀리고 기술 지재권 등의 문제로 표준화나 기술공개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

2)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계획 제출, 내·외부 CP간 요금제 등 차별 금지, IPTV와 유무선 연동서비스를 위해 SKT 무선망 연동 요구 시 부당 거부 금지 등

□ 가상이동망사업자(MVNO³⁾) 허용을 통한 망 개방 논의

- MVNO 도입은 유선사업자를 비롯해 인터넷서비스업체 등의 무선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 정부는 이러한 망 개방을 통한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MVNO 법제화를 추진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 재판매 의무사업자 지정’,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관련조항 정비’ 등 개정(국회 계류중)

< MVNO의 개념 >



- 향후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 타 산업과의 융합과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 촉진할 것으로 기대
- 망 중립 보장은 사업자들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도 중요
 - 콘텐츠별 매체별 망 이용가격 차별화 확대시 저소득층 등 일반이용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대한 선택권 제한 우려

3)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주파수와 무선국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사 망을 빌려 독립적인 브랜드와 요금체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III. 향후 정책방향

□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 공정경쟁 규제 및 방송영상·광고 진흥 기능의 일원화 필요성

- 방송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는 공익성과 대중적 영향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 일반적인 시장 사업자에 대한 규제기준 대신 방송통신 관련법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영국은 오프콤(OFCOM)에 방송통신 분야의 불공정 거래 규제 권한 이양

- 뉴미디어 포함 방송영상·광고 정책을 망라하는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을 통한 규제의 단순·일원화와 관련사업자의 편의 제고 필요
 - FTA에 대비하여 규제정책(규제완화)과 진흥정책의 종합적·균형적 추진 필요

□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조속한 전환 필요

- 방통융합 시대에 바람직한 규제 모델을 정립하여 산업 발전과 연계하는 등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제도 개선책이 요구됨
 - 규제수준의 적정성과 경쟁도입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 등장에 적절한 규제시스템 도입 필요

※ EU는 '02년 부터 전송부문과 콘텐츠 부문을 분리 규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OECD는 전송플랫폼 부문의 동일 규제 적용을 권고

□ M&A 등 산업간 융합 활성화와 규제 완화

-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 필요
 -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복리증진 차원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정경쟁 환경을 촉진하여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 혜택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이용자 편익 증진에 중점
- 신규진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어 유인책을 제공하고 기존 사업자들에게 공정경쟁 환경을 형성해 주는 등 정부의 조성책 필요

□ 방송통신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망과 콘텐츠에 대한 동등 개방 필요

- 망사업자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망 이용자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망 이용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
 - 망 사업자는 망의 투자비용회수와 재투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망 이용자는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경쟁 기반 요구
- 신규 미디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의 주요 콘텐츠에 대한 동등한 개방이 선행 되는 것이 바람직함
 - IPTV 등 사업자들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주요 공중파콘텐츠의 동등 개방을 요구하지만 공중파 방송사들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콘텐츠 동등개방에 부정적

< IPTV법 '망'·'콘텐츠' 동등 제공 관련 조항 >

○ 14 ()

가

가

1

3

가

20 ()

18 2
가

가

(" ")

가

1

1

가

< 참 고 자 료 >

- 김국진, "방송통신 융합의 이해", 나남출판, 2007.3
- 김도훈, "NGN과 망중립성 논의 : 역사적 배경과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주간기술동향, 제1226호, 2006. 10
- 김병운, "일본의MVNO 규제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6(7), 2002.
- 박석규 외, "IPTV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이해", 진한M&B, 2008.1
- 박은희,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격차해소 정책", KADO 이슈리포트 Vol.4 No.4, 통권 41호, 정보문화진흥원, 2007.
- 안형택 외, "디지털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 삼성경제연구소, 2007. 5
- 일간지, "디지털 데일리,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아이뉴스24, 전자신문 등"
- 이상우 외,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12
- 오수민, "영국의 망중립성 논의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 이석원 외,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기업 가치사슬의 변화", NIA Issue Report, 2006
- Anne Broache, "Obama pledges Net neutrality laws if elected president" CNET News.com, 2007.10.29
- Julie Ask, "MVNO Math(ESPN Mobile and other MVNO's)", Jupiter Research, 2006.